

#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지도위원회 지침

시행일 : 2019. 03. 01.

## 제1조 (목적)

본 지침은 변호사시험지도위원회(이하 위원회라 칭한다)의 구성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구성)

- ① 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장(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) 및 변호사시험지도교수, 공법(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), 민사법(민법,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), 형사법(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) 및 변호사시험 과목에 해당하는 전문적 법률분야의 과목을 대표하는 전공교수들로 구성된다.
- ② 대학원장 및 지도교수는 각 전공을 대표하는 운영위원을 겸할 수 있다.
- ③ 변호사시험운영위원회의 선발은 원장 및 지도교수가 상의하여 위촉한다.

## 제3조 (기능)

- 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.
  1. 변호사시험 준비부 연간 모의고사 및 특강프로그램
  2. 변호사시험 준비부 예산편성 및 집행
  3. 기타 변호사시험지도부 운영과 관련하여 지도교수가 보고하는 사항
- ②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4조 (소집)

위원회는 월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소집된다.

## 제5조 (변호사시험운영위원회의 임기 및 의무)

-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, 각 전공별 외부특강교수 초빙 및 내부특강, 기타 수험정보 개발 등에 있어서 변호사시험지도교수에 협조한다.

## 제6조 (규정의 개정)

규정의 개정은 본 대학원 규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개정 한다.

## 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본 지침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